



"기획는 공정하게! 희망은 다같이!"

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

보도자료

제 공 일 : 2012. 5. 15.
제 공 자 : 농림수산물부 어업정책과
과 장 : 강 인 구
사무관 : 임 동 규
전 화 : 500-2361
쪽 수 : 5P
별첨자료 : 있음(6P)

이 자료는 2012년 5월 18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연근해어업 허가정수 4,653건 감축

- 현행 56,534건 → (조정) 51,881건(△4,653건, △8.2%) 감축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◇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어업의 종류별로 허가정수를 재설정(조정)하고, 연안수역의 체계적 관리와 이용을 위해 정치성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정수를 신설

○ 정수조정 : (현행) 56,534건 → (조정) 51,881건(△4,653건, 8.2%)

• 허가정수가 설정된 32개 어업의 종류 중 어선세력이 수산자원량을 초과한 18개 업종의 정수를 감축

○ 정수신설 : 정치성구획어업의 9개 업종에 대해 4,570건 설정

□ 연근해어업의 허가정수가 5년만에 감축 조정되고, 정치성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정수가 처음으로 설정된다.

○ 농림수산물부(장관 서규용)는 지난 5.9.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'연근해어업 허가정수 조정 및 신설(안)'을 최종 결정하였다.

○ 새로운 허가정수(안)은 현행 56,534건인 연근해어업 및 이동성 구획어업의 정수를 51,881건으로 4,653건(8.2%) 축소하고, 그동안 허가정수가 없던 정치성 구획어업의 허가정수를 4,570건으로 신규 설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.

• 허가정수 :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·관리를 위해 어업의 종류별로 최대 허가할 수 있는 상한(上限). 자원의 상태,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, 그 밖의 자연적·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함(수산업법 제63조제1항)

□ '07년에 이어 이번에 어업허가 정수를 추가 조정한 이유는 일부 업종에서 자원량보다 이를 이용하는 어선의 수가 초과되어 자원남획 등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.

○ 우리 연근해의 수산자원량은 어선감척·종묘방류·바다목장화 등 정부의 자원조성 노력으로 2003년 757만톤에서 2011년 860만톤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, 여전히 연근해어업의 총 허가건수는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적정 허가규모보다 14.7% 높은 실정이다.

○ 또한, 농림수산물부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적정 어선척수에 관한 연구에서도 우리 연근해의 적정 어선 척수는 39,903척으로 '10년말 기준 47,521건 보다 7,618건(16%) 초과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.

○ 수산자원량 대비 이를 이용하는 어업세력의 초과가 지속될 경우 동종 업종내 자원경쟁이 불가피하고, 이로 인해 어린 고기 포획 등 남획이 초래되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

저해할 수 있으므로 어선척수 등 어업세력을 수산자원량에 적합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.

□ 금번 허가정수 조정은 국립수산물과학원의 과학적 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, 어업인구의 감소와 노령화에 대비한 젊은 어업인력의 유입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생산기반유지가 필요하다는 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감축폭을 최소화하였다.

•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자원평가 개요

- 지난 20여 년간 연근해에서 생산된 30개 주요 어종의 어획량, 산란·성숙체장 등의 변화추이를 분석한 후 이를 업종별로 어획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최대어획강도(fmsy)를 설정하고,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하여 최대어획강도의 2/3 수준으로 허가정수를 산출하여 감축규모를 제시
(수산물과학원 평가결과 현재 연근해어업의 어획강도는 적정 생산량 즉,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준보다 11.2%~17%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)

** 최대어획강도(fmsy, effort at maximum sustainable yield) : 수산자원을 최대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어획노력량

□ 금번 허가정수 조정은 ①수산자원 상태에 적합한 수준으로 정수를 조정하되, 어선감척 등 구조조정 정책기조 유지를 위하여 정수를 늘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양하며, ②감척·폐업 등 자연소멸로 허가 건수가 정수보다 적은 업종은 허가 건수를 정수로 반영하고, ③자원남획 및 어업갈등의 우려가 있는 어업은 추가 감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다.

○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근해어업의 허가정수는 현재 2,732건에서 2,639건으로 93건(3.4%) 감축된다.

• 근해어업 : 총톤수 8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전국 근해에서 조업이 가능하며 장관이 허가

- 한·중·일간 수산자원 확보경쟁 등을 고려하여 ①초과어획강도가 1~2% 수준으로 미미한 업종은 현재 정수를 유지하며, ②주변국 수역에 입어하여 자원을 확보하는 업종 및 대상 품목의 수산물 수급안정이 필요한 업종은 초과어획강도의 5% 수준에서 감축하여 조정을 최소화 하였다.

○ 연안어업은 현재 51,455건에서 47,578건으로 3,877건(7.5%) 감축된다.

• 연안어업 : 총톤수 8톤 미만의 어선으로 시·도 관할수역에서 조업하며, 시·도지사가 허가

- 연안어업이 우리 어촌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어업임을 고려하여, ①어업갈등 유발 등 감척이 필요한 업종은 초과어획강도만큼 정수를 감축하며, ②초과어획강도가 높으나, 연안자망·연안복합 등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업종은 초과어획강도의 50% 수준을 감축하고, ③허가정수가 자원 수준보다 낮은 업종은 현행 정수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정수를 설정하였다.

○ 구획어업 중 이동성 구획어업은 현재 허가처분 건수에서 초과어획강도만큼 감축하여 현재 2,347건에서 1,664건으로 683건(29.1%) 감축된다.

• 이동성 구획어업 : 시·군·구청 관할수역 내에서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(구획) 그 수역 내에서만 조업이 가능한 어업, 시·군·구청장이 허가

- 정치성구획어업은 연안수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해 2011년 현재 허가가 처분되어 있는 수를 정수에 반영하여 총 4,570건으로 설정되었다.

- 정치성 구획어업 : 시·군·구청 관할수역 내에서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(구획) 그 수역 내에 어구를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조업, 시·군·구청장이 허가

□ 이번에 설정된 연근해어업 허가정수는 『수산업법시행령』 및 『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』 개정 절차를 밟아 법령에 반영될 계획이며,

○ 금번 설정된 허가정수를 기준으로 금년도 어업인들이 희망하는 어선 감척을 추진할 방침이다.

붙임 1

연근해어업 허가정수 운영 경과

허가정수는 1953년 수산업법 제정시 어획강도가 높은 대형기선저인망·잠수기에 도입하여 2003년 전체 어선어업에 설정·운영 중

□ 허가정수 설정 목적

- 연근해어업의 종류별로 자원량에 적합한 최대 허가가능 건수를 설정·관리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
 - 신규허가 억제 및 정수를 초과한 허가에 대한 감척기준으로 활용
 - 근해어업의 허가정수 제한 등 사항(법 제61조제1항제3호)
 -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는 부령으로 정함(법 제41조제4항)

□ 근해어업

- '53년 수산업법 제정시 대형기선저인망 및 잠수기에 최초 정수 설정
- '76년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시 안강망, 유자망 등 8개 업종 정수 신설
- '82년 트롤 등 3개 업종 정수 추가, 안강망 등 8개 업종 정수 축소
- '96년 제주도 잠수기어업 허가 전부 폐지로 잠수기 정수 조정
- '03년 허가정수가 설정되지 아니한 7개 어업의 정수 신설
- '07년 근해어업 전체 허가정수의 33.9%(1,400건) 축소
 - 허가정수 : 4,132건(허가처분건수 4,509건) → 조정 2,732건

□ 연안어업

- '94년 연안어업에 대한 허가정수 최초 설정(석조망·양조망)
- '99년 연안 4개 어업에 대한 허가정수 추가 설정

- 허가정수 설정 어업 : 연안개량안강망, 연안양조망, 연안통발, 연안선인망
- '02년 모든 연안어업 및 이동성 구획어업에 대해 허가정수 설정
 - 연안어업 8개 업종 64,247건, 이동성 구획어업 4개 업종 3,608건
- '07년 연안어업 허가정수를 19% 감축하여 재설정
 - 67,855건(연안 64,247, 구획 3,608) → 54,961건(연안 52,613, 구획 2,348)
- '11년 어선감척사업을 위해 강원·제주지역 정수 1,158건 감축
 - 강원 복합 220건, 제주 938건(자망 145, 선망 6, 통발 4, 돌망 173, 복합 610)

□ 구획어업

- 이동성구획어업 : '02년 구획어업 중 이동성 구획어업 3개 업종에 대해 허가정수 신설(3,608건)
- 정치성구획어업 : 정치성구획어업('02년 당시 지인망 등 14종 허가처분 5,218건)에 대한 정수는 미설정
 - 정치성구획어업은 유사 어구·어법 통폐합에 따라 현재 9종임

붙임 2

어업의 종류별 및 시·도별 정수조정 내역

1

근해어업

어업의 종류	현재정수	허가건수	수산과학원 자원평가 결과 이용수준/자원상태	정수(안)
계	2,732	3,280		2,639
외끌이대형저인망	34	47	낮은수준/평형상태	34
쌍끌이대형저인망	38	36	중간수준/최근증가	37
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	20	39	낮은수준/평형상태	20
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	29	42	낮은수준/최근증가	29
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	7	9	높은수준/최근증가	7
대형트롤	37	52	중간수준/평형상태	34
동해구중형트롤	23	38	높은수준/최근감소	23
대형선망	29	25	중간수준/최근감소	25
소형선망	35	47	높은수준/최근감소	35
근해채낚기	618	699	중간수준/최근감소	588
근해자망	569	714	중간수준/최근감소	569
근해안강망	199	236	낮은수준/최근증가	199
근해봉수망	55	38	-	38
근해자리돔돌망	6	3	-	3
근해장어통발	40	65	낮은수준/최근감소	36
근해문어단지	40	29	-	32
근해통발	159	215	중간수준/최근증가	159
근해연승	479	548	높은수준/최근감소	456
근해형망			낮은수준/최근증가	
인천·경기·충남도	55	55		55
전북도	17	30		17
기선권현망			높은수준/최근증가	
부산·울산·경남도	54	61		54
전남도	14	16		14
잠수기			낮은수준/평형상태	
강원도	6	7		6
경북도	9	11		9
부산·울산·경남도	93	129		93
전남도	39	52		39
인천·경기·충남·전북도	28	37		28

2 연안어업

시·도별 배정기준

- 시·도별 허가정수 배정은 현행 정수에 업종별 조정을 만큼 감축하여 결정
 - * 소수점 처리 : 소수점 이하 4자리에서 반올림
- 조정된 정수(안)보다 허가처분 건수가 많은 시·도는 현행 정수를 유지
- 조정된 정수(안)보다 처분 건수가 적은 시·도는 처분 건수를 정수로 설정
 - * '11년말 기준 유예 중인 허가 건수는 정수에 추가 반영

□ 어업의 종류별 정수

어업의 종류	현재정수	허가건수	수산과학원 자원평가 결과 이용수준/자원상태	정수(안)
계	51,455	55,426		47,578
개량안강망	631	567	낮은수준/평형상태	547
연안선망	325	252	높은상태/최근증가	240
연안통발	4,676	7,419	높은상태/최근증가	4,676
연안조망	1,143	820	-	624
연안선인망	14	7	-	7
연안자망	17,206	17,682	낮은수준/평형상태	16,207
연안들망	608	806	높은상태/최근증가	598
연안복합	26,852	27,873	-	24,679

□ 시·도별 정수

구 분	계	부산	인천	울산	경기	강원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총 계	47,578	1,798	1,061	924	1,121	3,134	5,820	1,851	12,298	3,875	13,342	2,354
개량안강망	547	-	99	-	55	-	224	105	58	-	6	-
연안선망	240	6	-	-	-	18	36	16	69	20	67	8
연안통발	4,676	368	52	205	32	122	203	38	822	694	2,131	9
연안조망	624	-	-	-	-	-	474	150	-	-	-	-
연안선인망	7	-	-	-	-	7	-	-	-	-	-	-
연안자망	16,207	535	372	359	583	1,526	2,496	720	2,977	2,054	4,213	372
연안들망	598	42	-	-	-	3	-	-	31	-	25	497
연안복합	24,679	847	538	360	451	1,458	2,387	822	8,341	1,107	6,900	1,468

3 구획어업

- 지역별 배정 기준은 연안어업과 동일
- 정치성 구획어업은 '11년말 시·도별 허가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신설

(1) 이동성 구획어업

□ 어업의 종류별 정수

어업의 종류	현재정수	허가건수	수산과학원 자원평가 결과	정수(안)
			이용수준/자원상태	
계	2,347	1,880		1,664
새우조망	850	690	-	519
실뱀장어안강망	941	753	-	732
패류형망	556	437	낮은상태/최근증가	413

□ 시·도별 정수

구 분	계	부산	인천	울산	경기	강원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총 계	1,664	-	131	-	48	262	222	120	695	14	172	-
새우조망	519	-	-	-	-	-	-	-	347	-	172	-
실뱀장어안강망	732	-	131	-	48	-	222	120	211	-	-	-
패류형망	413	-	-	-	-	262	-	-	137	14	-	-

[2] 정치성 구획어업

□ 어업의 종류별 정수

어업의 종류	현재정수	허가건수	수산과학원 자원평가 결과 이용수준/자원상태	정수(안)
계	-	4,544		4,570
건강망	-	378	중간수준/평형상태	378
건 망	-	302	중간수준/평형상태	302
들 망	-	36	높은상태/최근증가	37
선인망	-	3	-	3
승망류	-	1,829	중간수준/평형상태	1,831
안강망	-	13	낮은수준/평형상태	13
장망류	-	1,964	높은상태/최근증가	1,987
지인망	-	17	-	17
해선망	-	2	-	2

□ 시·도별 정수

구 분	계	부산	인천	울산	경기	강원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총 계	4,570	42	87	59	24	88	583	82	2,693	163	749	-
건강망	378	-	74	-	21	-	2	-	226	-	55	-
건 망	302	13	-	49	-	25	-	-	-	58	157	-
들 망	37	1	-	-	-	-	-	-	-	-	36	-
선인망	3	-	-	-	-	-	-	-	2	-	1	-
승망류	1,831	25	-	7	-	63	103	19	1,085	95	434	-
안강망	13	-	13	-	-	-	-	-	-	-	-	-
장망류	1,987	-	-	-	1	-	478	63	1,380	-	65	-
지인망	17	3	-	3	-	-	-	-	-	10	1	-
해선망	2	-	-	-	2	-	-	-	-	-	-	-